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개최일시	2012.01.27(금) 11:00~12:10	회의장소	진관 101호 (세미나실)
참석자	오수근, 차미경, 조경원, 신경식, 이승욱, 서미옥, 서지희 (7인)		
불참자	정나위, 김한결, 장윤희, 최은, 심정현, 박현 (6인)		
안건	2012학년도 등록금 심의(1차)		
내용	<p>1. 개회</p> <p>- 위원장은 학생위원들을 20분간 기다리다 11시 20분경 총 위원 13명 중 학생위원 6명이 불참한 가운데 총 7명(교직원 위원 6명과 관련 전문가 1명)이 참석함을 확인하고 제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 개회를 선언하다.</p> <p>- 위원장은 당초 1월 17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, 학생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늦어진 점과, 2월 3일에는 반드시 신입생 등록금 고지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부득이 학생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유감임을 밝히다.</p> <p>- 위원장은 학생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, 위원회구성에 대한 학생들과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위원들이 불참하게 되었으며 학생요구안과 학교측 대응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.</p> <p><u>학생 요구안</u> ①학교.학생위원 동수(관련전문가 포함) 구성 ②위원회 의결권 부여 ③학생들의 외부위원 선임권 ④위원회의 일반 학생 공개</p> <p><u>학교측 대응</u> ①학교.학생위원 6:6으로 동수 구성함 ②학생들이 요구하는 의결권은 등록금 책정의 결정권이며 이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고등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임 ③외부위원 선임권은 학교장의 권한이며, 외부위원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데 학교의 외부감사는 그러한 의미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 할 수 있으며, 타 대학도 대부분 외부감사를 외부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음.</p>		

④ 대표성이 있는 단대 또는 전공대표들의 참관은 수용할 수 있으나, 일반학생 공개는 회의의 효과적인 진행을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음. 타 대학의 경우에도 일반 학생의 참관을 허용하는 예는 없음.

- 등록금 책정에서 학생위원회들의 의견 반영이 매우 중요하므로 1차 위원회에서는 등록금에 관한 심의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다.

2. 심의사항

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내규만 검토하기로 함.

- 위원장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위원회 내규(안)은 2011학년도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규에 2012학년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임을 설명하다.
- 위원은 향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만 수정할 경우 다시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문의하다.
- 위원장이 고등교육법 등 상위법에 근거한 내규(안)은 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므로 확인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으나,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내규(안)에 '본 내규의 상위법이 개정될 때에 그에 따른다'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다.
- 위원은 위의 내규(안)의 내용중 법령에 준한 것 외에 추가된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하다.
- 위원은 내규(안)중 추가된 내용은 내규(안) 제2조 제4항, 제5항,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이라고 답하다.
 - 제2조 제4항: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
 - 제2조 제5항: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이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의 경우 총학생회의 임기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
 - 제3조 제2항: 기타 위원회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제4조 제1항: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
- 위원은 위원회 내규(안) 제4조 제3항의 의결이란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문의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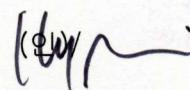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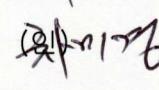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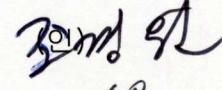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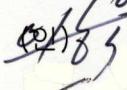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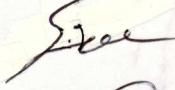
- | | |
|--|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위원은 위 제4조 제3항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의미이며, 이 결과가 최종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다.
 ▪ 위원은 의결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혼동이 올 수 있으므로 제4조 제3항 및 제4조 제3항의 3 '의결'이란 용어를 '정한 사항'으로 수정하기로 하다. |
|--|--|

3. 폐회

위원장이 위의 논의 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12학년도 내규(안)를 품의하기로 하고, 다음 회의에서는 2012학년도 예산(안)을 검토하기로 한 후 12시 1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. (이상)

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 함

2012년 1월 28일

확 인	위원장	오 수근	
	위원	신 경식	
	위원	차미경	
	위원	조경원	
	위원	이승욱	
	위원	서미옥	
	위원	서지희	
작성자	소속 : 예산과	성명 : 이지영	